

I. 청소년기본법(안)

(청소년육성법과의 비교)

청소년기본법(안)
- 청소년육성법과의 비교 -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人格形成을 도모하고, 靑少年의 보호·육성·善導 및 지원에 관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靑少年이 國家·社會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有能한 國民으로 成長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신 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權利 및 責任과 家庭·社會 및 國家의 靑少年에 대한 責任을 정하고, 靑少年育成政策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①未來社會의 主役이 될 靑少年들이 풍부한 知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情緒와 勇氣가 충만하고, 이웃과는 禮節과 協同을 바탕으로 共同體의 삶을 實踐하며, 自由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信念과 祖國에 대한 無限한 矜持를 가지고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能動的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②第1項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長期的·綜合的인 靑少年育成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이 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청소년 정책구현의 이념과 그 추진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기본 이념을 명시함.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號의 사항을 그 推進方向으로 한다. 1. 青少年의 自律性에 기초한 能動的 삶의 實現 2. 青少年의 成長與件과 社會環境의 개선 3. 民主·福祉·統一祖國에 대비하는 青少年의 資質向上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青少年”이라 함은 9歲이상 24歲이하의 者를 말한다. 2. “青少年施設”이라 함은 學校施設외에 青少年의 心身鍛鍊과 情緒啓發을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3. “青少年團體”라 함은 青少年의 보호·육성·善導 및 自律活動의 지원(이하 “육성등”이라 한다)을 主된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號의 사항을 그 推進方向으로 한다. 1. 青少年의 自律性에 기초한 能動的 삶의 實現 2. 青少年의 成長與件과 社會環境의 개선 3. 民主·福祉·統一祖國에 대비하는 青少年의 資質向上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青少年”이라 함은 9歲이상 24歲이하의 者를 말한다. 2. “青少年育成”이라 함은 青少年修鍊活動을 지원하고, 青少年의 福祉를 增進하며, 青少年交流를 振興하고, 社會與件과 環境을 青少年에게 有益하도록 改善하여 青少年에 대한 教育과 상호補完 함으로써 青少年의 均衡있는 成長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青少年 修鍊活動”이라 함은 青少年이 生活圈 또는 自然圈에서 心身鍛鍊·資質培養·趣味開發·情緒涵養과 社會	청소년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청소년 육성법에 대하여 청소년 육성·청소년 수련활동·청소년 수련거리·청소년 지도자가 추가되고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지구로 나누어 규정함.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奉仕로써 배움을 實踐하는 體驗活動을 말한다. 4. “青少年 修鍊거리”라 함은 青少年 修鍊活動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青少年 修鍊施設”이라 함은 學校施設외에 青少年 修鍊活動을 실시할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6. “青少年 修鍊地區”라 함은 青少年 修鍊活動을 실시할 目的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地區를 말한다. 7. “青少年指導者”라 함은 青少年 修鍊施設, 青少年團體 기타 青少年 關聯機關등에서 青少年育成에 증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8. “青少年團體”라 함은 青少年 修鍊活動을 통한 青少年育成을 주된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3條(適用範圍) 靑少年의 육성등에 관하여는 다른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法을 適用한다.	第4條(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은 靑少年育成에 관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이 제청소년 관계법들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우선적 효력을 담보 받고자 함. 청소년 육성법 수용.
第4條(靑少年의 權利와 責任) ①靑少年은 안전하고 쾌적한 環境속에서 自己發展을 追求할 權利가 있으며 精神的·肉體的 健康을 害하거나 害할 우려가 있는 모든 形態의 環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靑少年은 自身의 能力開發과 건전한 價値觀의 확립에 힘쓰고, 家庭·社會 및 國家의 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靑少年의 權利와 責任) ①靑少年은 안전하고 快適한 環境속에서 自己發展을 追求할 權利가 있으며 精神的·身體的 健康을 害치거나 害칠 우려가 있는 모든 形態의 環境으로부터 保護되어야 한다. ②靑少年은 自身의 能力開發과 건전한 價値觀의 확립에 힘쓰고 家庭·社會 및 國家의 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家庭의 責任) 家庭은 靑少年의 個性과 資質을 바탕으로 自己發展을 實現하고, 家庭뿐 아니라 國家와 社會의 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는 後繼世代로 成長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家庭의 責任) 家庭은 靑少年이 個性과 資質을 바탕으로 自己發展을 實現하고 國家와 社會의 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는 後繼世代로 成長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의 構成員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힘쓸 것을 명시.
第6條(社會의 責任) ①모든 國民은 靑少年의 思考와 行動樣式의 特性을 認	第7條(社會의 責任) ①모든 國民은 靑少年이 日常生活 속에서 즐겁게 活動	사회적 책임을 규제적이고 대응적 차원과 병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識하고 사랑과 대화로써靑少年을 이해하고 指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의 脫線을 放任하거나 善導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國民은 靑少年을 對象으로 하거나 靑少年이 쉽게 접할 수 있는 場所에서 그들의 精神的·肉體의 健康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環境의 淨化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國家의 責任) 國家는 靑少年이 올바른 國家觀과 건전한 價値觀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	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靑少年의 思考와 行動樣式의 特性을 認識하고 사랑과 對話로써 靑少年을 이해하고 指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의 脫線을 放任하거나 善導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國民은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거나 靑少年이 쉽게 접할 수 있는 場所에서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環境을 淨化하고 有益한 環境이 造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國民은 經濟的·社會的·文化的·精神的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靑少年들에게 특별한 關心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 修鍊活動(이하 “修鍊活動”이	행하여 능동적·예방적 차원의 책임을 부과함. 국가의 책임을 규제화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을 이어나갈 훌륭한 國民이 되도록 靑少年의 育成을 행할 責任을 진다. (신 설)	라 한다)을 助長하고, 靑少年의 福祉를 增進하며,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의 責任遂行에 필요한 與件을 造成하고 이에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와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任을 진다. 第9條(靑少年交流의 振興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國際交流를 확대하기 위하여 外國 및 國際靑少年機構와 情報交換을 活性化하고, 상호 協力體制를 構築하는등 靑少年의 國際交流 振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南·北 靑少年의 同質性 회복과 海外僑胞 靑少年育成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章 靑少年育成政策의 總括 第10條(靑少年育成政策의 總括) 靑少年育成政策은 體育靑少年部長官이 關聯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總括한다.	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밝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 보장, 해외 교포 청소년 지원 시책 강구 규정. 청소년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정책의 효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第 11 條(靑少年活動의 領域 區分과 支援體系) ①靑少年活動은 다음 各號의 領域으로 구분한다. 1. 主로 學校·職場·服務處를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學業·勤勞·服務活動領域을 固有活動領域으로 한다. 2. 主로 生活圈이나 自然圈에서 心身鍛鍊·資質培養·趣味開發·情緒涵養·社會奉仕등 배움을 實踐하는 體驗活動領域을 修鍊活動領域으로 한다. 3. 主로 家庭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自由活動領域을 任意活動領域으로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活動領域의 活性化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開發하고, 固有活動領域 및 任意活動領域과 상호 補完하여 靑少年의 均衡있는 成長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성을 기하고자 함. 정소년의 활동 영역별로 그에 적절한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보장하고자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8條(靑少年育成委員會 등) ①靑少年의 육성등을 위한 綜合計劃의 審議와 政府의 主要 靑少年關係 施策의 調整을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靑少年育成委員會를 둔다. ②靑少年育成委員會는 第1項의 審議事項을 미리 檢討하고 관계時策의 調整에 관한 관계機關간의 協調事項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靑少年育成委員會에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를 둔다. ④靑少年育成委員會·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 및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靑少年育成委員會 등) ①靑少年育成에 관한 主要時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靑少年育成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靑少年 基本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 2. 中·長期 靑少年 政策 方向의 設定 3. 靑少年育成을 위한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部處에 關連되는 主要 靑少年政策에 관한 사항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③委員會는 第2項의 審議事項을 미리 檢討하고 關係機關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靑少年育成政策에 관한	현 靑少年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靑少年 육성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 함.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8條(青少年育成委員會等) ③青少年的 育成 등에 관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道 및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郡·區의 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道 및 市·郡·區에 青少年育成地方委員會를 둔다. (신 설)	國民的 總意를 結集하기 위하여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青少年育成政策會議을 둘 수 있다. 第13條(地方青少年委員會) ①青少年育成 등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特別市·直轄市·道 및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의 區를 말한다.)에 地方青少年委員會를 둔다. ②地方青少年委員會를 구성·組織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青少年基本計劃의 수립) ①國家는 青少年育成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青少年育成에 관한 基本方向 2. 青少年育成에 관한 推進目標 3. 青少年育成에 관한 機能의 調整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회로 개칭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사전제시로 청소년시책의 효율성·체계성 도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10 條(綜合計劃의 수립 등) ①國家는 靑少年의 육성등을 위한 家庭·學校·社會의 각 領域에 걸친 綜合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綜合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靑少年育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및 第2項의 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社會團體 기타 民間事業體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④體育靑少年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綜合計劃의	4. 靑少年育成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方法 5. 기타 靑少年育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의 施行計劃을 總括·調整한다. 第 15 條(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의하여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 16 條(計劃樹立의 협조)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종합계획을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명칭변경.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각 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조 근거 조항.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수립·施行을 統括·調整한다. ⑤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綜合計劃과 그 施行結果에 관하여 매년 1回 國會에 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靑少年의 달) 國民에게 靑少年의 육성등을 위한 意識을 鼓吹하고 靑少年의 건전한 발전과 成長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月을 靑少年의 달로 한다.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公共機關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7條(靑少年의 달) 靑少年의 能動的이고 自主的인 主人意識을 鼓吹하고, 靑少年育成등을 위한 國民의 參與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매년 5月을 靑少年의 달로 한다. 第3章 靑少年修鍊活動의 지원등 第18條(修鍊거리의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거리의 이용대상 및 年齡, 場所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分野別로 균형있게 修鍊거리를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거리의 開發·普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청소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지식위주의 편향된 교육환경 속의 청소년들을 보다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수련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17 條(青少年指導者の育成) ①國家의 青少年指導者の 양성과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者の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青少年團體를 青少年指導者研修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青少年指導者研修機關에 그 研修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 19 條(青少年指導者の養成等) ①國家는 青少年指導者の 養成과 資質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體育青少年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者の 養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青少年團體·大學 기타 團體등을 青少年指導者養成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者養成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養成에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이끌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第 17 條(青少年指導者の育成等) ④青少年施設 및 青少年團體는 施設의 효율적인 이용 또는 青少年의 건전한 指導를 위하여 青少年指導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第 20 條(青少年指導者の配置等) ①青少年修鍊施設(이하 “修鍊施設”이라 한다) 및 青少年團體는 青少年의 건전한 修鍊活動을 指導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者の 配置對象 및 配置基準은 體育青少年部令으로 정한다.	각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단체에 전문연수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을 내실 있게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第9條(靑少年指導委員) ① 市·郡·區의 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靑少年의 指導를 담당하기 위하여 靑少年指導委員을 위촉한다. ②靑少年指導委員의 資格·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自願하여 靑少年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第21條(靑少年指導者의 資格등) ①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指導者養成機關등에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한 者에게 靑少年指導者資格證을 교부한다. ②靑少年指導者의 등급별 資格·資格證의 交付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靑少年指導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靑少年의 指導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靑少年指導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指導委員의 資格·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재 靑소년 지도자에 대한 자격제도의 부재로 靑소년지도자에 대한 위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靑소년지도자 자격제도입.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3 章 青少年團體等 第 15 條(協助 및 지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協助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와 지원의 범위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6 條(補助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青少年團體에 대하여 그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의 범위와 基準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한다. (신 설)	第 23 條(青少年團體의 육성·지원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4 條(收益事業) ①青少年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修鍊活動과 관련한 收益事業을	청소년 단체의 지원 근거 보완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수련활동과 관계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18 條(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①青少年團體는 青少年의 육성등을 위한 다음 各號의 事業과 活動을 하기 위하여 體育青少年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1. 會員團體가 행하는 事業과 活動에 대한 協調 지원 2. 青少年指導者의 研修 3. 外國의 青少年團體와 的交流와 그 지원 4. 기타 青少年團體의 육성등에 필요한 事業 ②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범위·收益金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5 條(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①青少年團體는 青少年育成등을 위한 다음 各號의 活動등을 하기 위하여 體育青少年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1. 會員團體가 행하는 事業과 活動에 대한 협조·지원 2. 青少年指導者의 研修 및 交流 3. 外國 青少年團體와의 交流 및 지원 4. 南·北青少年의 同質性 회복 및 海外僑胞青少年의 지원 5. 기타 青少年團體의 육성등에 필요한 事業 ②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設立한다. ④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	으로써 재정적 자립을 보조함. 청소년 단체 협의회의 활동과 기능을 활성화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2章 靑少年施設 第12條(施設의 設置·운영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靑少年修鍊施設 第26條(修鍊施設의 設置·운영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體育靑少年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의 修鍊施設의 設置·運營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 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修鍊施設을 休止·廢止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은 이를 운영하	靑少年 수련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규 靑少年 수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신고제를 허가제로 함. 수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考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 13 條(施設운영의 委託)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施設을 設置한 경우 당해 施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靑少年團體에 그 운영을 委	기 전에 당해 修鍊施設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特別市·直轄市·道에 謄錄하여야 한다. ④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謄錄을 받은 때에는 그 修鍊施設을 登錄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하고, 이를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 27 條(修鍊施設 운영의 委託)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修鍊施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團體등에 그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방지하고자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託할 수 있다. (신 설)	第28條(修鍊施設の 施設基準) 修鍊施設の 施設基準 및 安全基準등은 體育靑少年部令으로 정한다.	기준미달의 시설 설치물 지양하고 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
(신 설)	第29條(是正命令) 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安全基準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수련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신 설)	第30條(금지행위)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正當한 사유없이 靑少年의 修鍊施設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修鍊活動 외의 用途에 修鍊施設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련시설을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작용 방지
(신 설)	第31條(許可取消등) ①體	부정한 방법으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育靑少年部長官은 第2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作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謄錄을 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②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修鍊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正當한 사유없이 3월 이상 修鍊施設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3回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體育靑少年部令으로 정한다. ④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	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자 함. 시설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준수토록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14 條(使用料 등) ①靑少年施設은 영리의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靑少年施設의 유지·補修에 필요한 最小限의 범위안에서 당해 施設의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③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料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施設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使用料 徵收에 관한 許可를	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32 條(利用料 등) ①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修鍊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利用料를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利用料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體育靑少年部令으로 정한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를 관리.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받았거나 申告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33條(保險加入) 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修鍊施設의 設置·운영과 관련하여 事故가 발생한 경우 被害를 補償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保險에 加入하게 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신 설)	第34條(修鍊施設의 讓渡·讓受)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修鍊施設의 讓渡·讓受(修鍊施設 設置法人을 合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體育靑少年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修鍊施設에 대하여는 그 讓渡·讓受를 제한할 수 있다. ②修鍊施設의 讓渡·讓受 또는 修鍊施設 設置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讓受人과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修鍊施設 設置의 許可 또는	수련시설은 토지 이용·세제 등의 혜택을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양도·양수에 통제가 필요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修鍊施設 登録에 따르는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 35 條(公共施設의 우선 設置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의 設置·운영과 관련되는 道路, 電氣, 上·下水道등 公共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며 기반시설이 취약한 산간벽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함.
(신 설)	第 36 條(公共施設등의 開放)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機關 등은 그가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靑少年의 修鍊活動에 필요한 경우에 그 施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靑少年의 修鍊活動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을 수련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길 모색.
(신 설)	第 37 條(民間人の 參與助長)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가 修鍊施設의 設置를 쉽게 할 수 있도록 土地·金融·稅制 기타 行政節次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신 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修鍊施設에 대하여 土地·金錢등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出捐者의 姓名등을 그 修鍊施設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第3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解除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1.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등의 立地에 관한 協議 및 승인 2.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의 許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의 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의 認可 3.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	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절차가 많아 수련시설 설치시 절차가 복잡하며 수련 시설로서 허가가 나도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없이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수련시설 허가시 복합민원으로서 일괄 처리토록 하여 민원 편의주의를 도모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園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 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4. 農地의 保全 및 利用 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 許可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 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6. 山林法 第18條의 規定 에 의한 保全林地轉用 의 許可, 同法 第62條 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 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 서의 행위의 許可 7.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域 안에서의 立木·竹의 伐 採등의 許可, 同法 第 20條의 2의 規定에 의 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8.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許可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登錄 한 때에는 당해 修鍊施設	시설설치후 등 록시 운영과 관련되는 인·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에 대한 다음 각號의 許可·승인·지정을 받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1. 體育施設의 設置·이용에 관한 法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의 申告 2. 公衆衛生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衛生接客業중 理容業·美容業 또는 電子遊技場業중 青少年用 電子遊技場業의 許可 또는 申告 3.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과자店營業의 許可, 同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集團給食所의 設置·운영의 申告 4. 人蔘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紅蔘類販賣人의 지정 5. 郵便法 第2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郵票類販賣業務의 許可 및 私設郵遞筒 設置의 승인 ③體育青少年部長官은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	허가 등을 의제 처리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한 관계 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4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體育靑少年部長官은 市·道知事로부터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登錄報告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를 받은날부터 15日이내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 39 條(修鍊施設 設置·運營者協會의 設立)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 또는 運營하는 者는 修鍊施設의 運營발전을 위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修鍊施設 設置·運營者協會(이하 “施設者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施設者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施設者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	수련시설설치자 및 운영자들이 상호간 협조 및 교류와 대정부 건의등을 할 수 있는 창구마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施設者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5 章 靑少年修鍊 地區의 지정등 第 40 條(修鍊地區의 지정등) ①體育靑少年部長官은 修鍊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名勝古蹟地, 歷史遺物·遺蹟地 또는 自然景觀이 秀麗한 地域으로서 修鍊活動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地域을 靑少年修鍊地區(이하 “修鍊地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地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の 의견을 들은 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청소년들의 종합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같다. ③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地區를 指定한 때에는 區域·면적·指定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修鍊地區의 指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⑤修鍊地區의 指定節次, 修鍊地區안에서 設置할 수 있는 施設의 종류·범위·면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1條(修鍊地區造成計劃 등) ①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地區를 關할하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修鍊地區造成計劃(이하 “造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도 또한 같다. ②法人 또는 團體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造成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이 경우 體育靑少年部長官은 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修鍊地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은 自然狀態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造成計劃(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法人 또는 團體의 造成計劃을 포함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⑤政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42條(收用 및 사용) ①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施行者는 造成計劃의 施行에 필요	수련지구조성시 환경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의 수행을 위한 근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한 土地・建築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이나 이에 대한 所有權 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및 사용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第43條(造成計劃에 의한 施設設置등) ①修鍊地區 안에서의 修鍊施設 및 기타 施設의 設置는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法人 또는 團體인 때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體育靑少年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 외의 者에 대하여 修鍊地區 안에서의 修鍊施設 또는 기타 施設의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體育靑少年部長官은 그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修鍊地區를 管轄하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거 마련 수련지구조성 시 사업자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타인의 참여도 허용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第44條(修鍊地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修鍊地區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正當한 이유없이 土石·자갈·모래를 採取하거나 立木·竹을 伐採하는 행위 2. 靑少年의 射倖心を 助長하거나 美風良俗을 해치는 행위 3. 이 法에 의한 造成計劃에 의하지 아니한 土地의 이용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靑少年에게 해로운 행위	수련지구안에서의 무분별한 환경의 훼손이나 시설의 무단설치를 방지
(신 설)	第4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解除·승인 또는 同意를 얻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1. 都市計劃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의 許可, 同法	수련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인·허가의 의제 처리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 水道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敷設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5.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 6.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8.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施行의 許可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發의 許可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의 許可·同意 및 協議, 同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11.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用 또는 公共用 目的으로의 轉用을 위한 協議·同意 또는 승인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1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立木·竹의 伐採 등의 許可, 同法 第2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4.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 및 公園施設管理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域안에서의 행위의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許可 ②體育靑少年部長官은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관계 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6 章 靑少年福祉등 第 46 條(靑少年 福祉增進 등) ①國家는 靑少年들이 처해있는 客觀的인 狀況과 그들의 意識·生活態度 등을 定期的으로 調査하여 靑少年의 福祉增進政策의 수립·施行에 基礎資料로 活用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活動·教育·職業訓練·醫療保護 등의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經濟的·精神的·身體的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配慮하여야 한다.	靑소년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靑소년 육성정책에 반영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第 47 條(青少年관련 媒介物 著作者등에 대한 지원 등) ①新聞·映畫·演劇 및 刊行物등을 著作·發行·製作 또는 普及하는 者는 이러한 媒介物이 青少年의 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에게 有益한 媒介物의 著作등을 獎勵하여야 하며, 이러한 媒介物의 著作·普及등을 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그 著作·普及등에 관한 經費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대중매체의 저작 등에 관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매개물이 청소년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선량 의무 명시 청소년에게 유익한 대중매체의 저작자 지원
(신 설)	第 48 條(青少年有害要因 整備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주로 青少年이 많이 이용하는 施設 및 場所에서 青少年에게 有害한 業所를 設置하거나 有害한 행위를 하도록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에게 有害한 業所 및 有害한 행위에 대한 民間人의 自律的인 淨化努力을 助長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 조성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필요한 경우 青少年專用活動地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青少年活動에 필요한 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第 4 章 韓國青少年研究院	第 49 條(青少年的 非行豫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的 非行豫防 및 非行青少年에 대한 善導와 非行青少年이 修鍊活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행 청소년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第 19 條(研究院) ①青少年的 육성등에 관한 調査·研究 및 研修를 담당하기 위하여 韓國青少年研究院(이하 “研究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研究院은 法人으로 하고,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	第 7 章 韓國青少年開發院·韓國青少年修鍊院·韓國青少年相談院 등 第 50 條(韓國青少年開發院의 設立) ①青少年的 육성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施行하기 위하여 韓國青少年開發院(이하 “開發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1. 青少年 관련 理論의 研究	한국청소년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으로써 成立한다. ③研究院의 設立登記 및 變更登記등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21 條(事業) 研究院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靑少年의 意識構造 및 活動實態에 관한 調査 研究 2. 靑少年指導者의 양성 및 靑少年團體의 육성에 관한 計劃의 수립·施行 3. 靑少年의 육성등을 위한 政策의 研究 및 프로그램의 開發 4.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5. 기타 研究院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 20 條(定款) ①研究員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2. 修鍊거리의 開發 및 普及 3. 靑少年指導者의 養成 4. 靑少年實態에 관한 基礎調査 및 分析 5. 기타 體育靑少年部長官이 지정하는 事業 및 開發院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 51 條(定款) ①開發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3. 事業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②研究院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2條(任員) ①研究院에 理事長 및 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②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③理事長 및 理事(院長을 제외한다)는 非常任으로 한다. ④任員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3條(院長) ①研究院에 院長 1人을 둔다. ②院長은 研究院을 代表하며, 研究院의 事務를 總括한다.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開發院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2條(任員) ①開發院에 理事長 및 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②理事長은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理事長 및 理事(院長을 제외한다)는 非常任으로 한다. ④理事 및 監査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이 任免하며, 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第53條(院長) ①開發院에 院長 1人을 둔다. ②院長은 理事會의 提議으로 體育靑少年部長官이 任免한다. ③院長은 開發院을 代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24 條(出損金) ①政府는 研究院의 事業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充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出損金을 교부할 수 있다. 第 25 條(事業計劃등의 제출) ①研究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마다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事業年度 開始전에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研究院은 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の 3月 20日까지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26 條(民法의 準用) 研究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	하며 開發院의 事務를 總括한다. 第 54 條(出損金) ①政府는 開發院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充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出損金을 교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出損金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55 條(事業計劃書등의 제출) ①開發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每事業年度 開始 20日전까지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開發院은 每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の 3月 20日까지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56 條(民法의 準用) 開發院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57 條(韓國靑少年修鍊院의 設置) ①修鍊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韓國靑少年修鍊院(이하 “修鍊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1. 修鍊거리 運營의 專門技法 研究·지원 2. 主要 修鍊거리의 示範運營 3. 靑少年指導者의 現場實習 지원 4. 修鍊活動 記錄의 유지·관리 5. 修鍊活動 관련 情報의 綜合·관리 6. 修鍊施設間의 協力·補完支援 7. 기타 體育靑少年部長官이 指定하는 사업 및 修鍊院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修鍊院은 필요한 경우에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둘 수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하기 위한 한국청소년 수련원 설립 근거 마련
(신 설)	第 58 條(韓國靑少年相談院의 設立) 靑少年의 올바른 人格形成과 調和로운	한국청소년상담원 설립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成長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韓國 青少年相談院(이하 “相談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1. 青少年 相談技法의 研究 및 相談資料의 製作・普及 2. 青少年 相談事業의 示範運營 3. 相談人力의 養成 및 研修 4. 青少年 相談機關간의 連繫 및 지원 5. 기타 體育青少年部長官이 지정하는 사업 및 相談院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第 59 條(準用規定) 第50條 第2項·第51條 내지 第56條의 規定은 修鍊院 및 相談院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신 설)	第 60 條(地方 青少年 相談室)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는 地方 青少年 相談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신 설)	第 61 條(青少年 相談員의 資格등) ①體育 青少年 部長官은 相談院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履修한 者에게 青少年 相談員 資格證을 교	청 소년 상담원 의 자격규정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 5 章 靑少年育成基金 第 27 條(基金의 設置) 靑少年의 育成등을 위한 事業의 支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靑少年 育成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第 28 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損金 2. 政府와의 者가 出損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第1項第2號의 경우에 政府와의 者는 用途를 지정하여 出損할 수 있다. 다만, 特定團體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정할 수 없다.	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相談員의 등급별 資格·資格證의 交付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8 章 靑少年育成基金 第 62 條(基金의 設置) 靑少年育成을 위한 事業의 支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靑少年育成 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63 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損金 2. 政府와의 者가 出損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出損하는 者는 用途를 지정하여 出損할 수 있다. 다만,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지정 을 할 수 없다.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第29條(基金의 管理·운용) ①基金은 體育青少年部長官이 管理·운용한다. ②體育青少年部長官은 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한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研究院이나 國民教育振興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올림픽 記念 國民體育振興公園에 委託할 수 있다. ③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1. 青少年施設의 設置·운영의 지원 2. 青少年團體의 活動의 지원 3. 青少年의 건전한 活動의 지원 4. 青少年指導者 育成事業의 지원 5. 青少年의 國際交流의 지원 6. 기타 青少年의 육성등	第64條(基金의 관리·運營) ①基金은 體育青少年部長官이 관리·運營한다. ②體育青少年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營에 관한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院 또는 國民體育振興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올림픽 記念 國民體育振興公園에 委託할 수 있다. 第65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1. 修鍊活動의 지원 2. 修鍊施設의 設置 및 운영지원 3. 青少年指導者의 養成支援 4. 青少年團體의 活動支援 5. 어려운 青少年에 대한 지원 6. 青少年의 交流支援 7. 기타 青少年育成등을	기금의 용도중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추가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을 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지원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第 6 章 補 則	第 9 章 補 則	
第 31 條(國·公有財産의 貸付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施設이나 靑少年團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靑少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靑少年團體간의 契約에 의한다.	第 66 條(國·公有財産의 貸付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의 設置, 靑少年團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財産의 貸付· 사용·收益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財産을 사용·收益하고자 하는 者와 당해 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간의 契約에 의한다.	
第 32 條(租稅減免 등) ①政府는 靑少年施設과 靑少年團體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 67 條(租稅減免 등) ①政府는 修鍊施設 및 靑少年團體, 開發院·修鍊院·相談院등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조세감면대상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수련원·상담원을 포함시키고 이들 출연하는 금전·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 考
②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의 지원이나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으로 出損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할 수 있다. 第 33 條(監督)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青少年施設·青少年團體 및 青少年指導者研修機關에 대하여 青少年의 育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資料 및 報告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體育青少年部長官은 第 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	있다. ②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지원, 開發院·修鍊院 및 相談院의 운영 지원,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出損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할 수 있다. ③修鍊活動 관련機關이 輸入하는 修鍊活動에 직접 사용되는 實驗·實習·視聽覺機資材 기타 필요한 用品등에 대하여는 關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 68 條(監督)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의 育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修鍊施設, 青少年團體, 開發院·修鍊院·相談院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標을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 수련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관세감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여 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한 事務를 委託받은 機關에 대하여 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한 事務를 委託받은 機關에 대하여 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한 資料 및 報告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4條(褒賞) 政府는 靑少年의 育成등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다른 靑少年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이를 격려하고 勸獎하기 위하여 褒賞할 수 있다. 第35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研究院이 아닌 者는 韓國靑少年研究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69條(褒賞) 政府는 靑少年育成등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다른 靑少年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第70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開發院·修鍊院·相談院이 아닌 者는 韓國靑少年開發院·韓國靑少年修鍊院·韓國靑少年相談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第71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體育靑少年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申請하는 者 2.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 3.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	
(신 설)	第72條(權限의 위임·委託) 體育靑少年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靑少年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신 설)	第10章 罰 則 第73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收益事業을 한 者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신 설)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造成計劃을 施行 한 者 4.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 하고 修鍊施設 및 기타 施設을 設置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 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修鍊施設을 休止· 廢止 또는 변경한 者 2.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 하고 修鍊施設을 운영 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修鍊施設의 利用 料를 받은 者 5.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修鍊施設을 讓渡 하거나 修鍊施設 設置 法人을 合併한 者 第74條(兩罰規定) 法人의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第36條(過怠料) ①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10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5條(過怠料) ①第6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 各號의 行위를 한 者 2.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修鍊地區안에서 同條 各號의 行위를 한 者 3.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體育靑少年部長官(第72條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權限을 위임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體育靑少年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	

青少年育成法	青少年基本法(案)	備考
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研究院의 設立準備) ①體育青少年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會를 위촉하여 研究院 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구성하고 研究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研究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體育青少年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設立委員會 委員의 連名으로 研究員의 設立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研究院의 院長이 任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務를 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3條(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議會로 본	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青少年育成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青少年育成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青少年育成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育成委員會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育成委員會로, 同法,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育成實務委員會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育成實務委員會로,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育成地方委員會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青少年委員會로 본다. 第4條(青少年育成綜合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青少年育成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施行計劃으로 본다. 第5條(設置중인 青少年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青少年育成法 第12條 第2項의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體育靑少年部長官에게 定款變更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規定에 의하여 設置중인 靑少年施設은 第2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 중인 修鍊施設로 본다. 第6條(靑少年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靑少年施設은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修鍊施設로 본다. 第7條(靑少年施設의 使用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使用料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받은 利用料로 본다. 第8 조(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로 본다. 第9條(韓國靑少年研究院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	

靑少年育成法	靑少年基本法(案)	備 考
	成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研究院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開發院으로 본다. 第 10 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靑少年育成法을 인용한 것은 이 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靑少年育成法의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Ⅱ. 외국의 청소년관계법(발췌)

1. 1969년 청소년법(영국)
2. 청소년보호법(독일)
3. 소년복지법(중화민국)
4. 국가 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스웨덴)
5. 청소년종합서비스법안(미국)

1. 1969년 청소년법(영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1969년 10월 22일 제정)

제 1 장 법원소송절차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 및 기타 처우

제 1 절 소년법원을 통한 소년 및 청년의 보호

제 1 조(소년법원의 보호소송) ①어떠한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이 조의 명령을 내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방당국, 경찰관 또는 권한있는 자는 이 법 제2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을 위한 보호소송을 소년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어떠한 소년 또는 청년의 보호에 관한 이 조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당해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이 조의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능하지 아니한 보호 또는 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1970년 지방관청사회봉사법 제2조 및 1933년 지방정부법 제85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제한하는 1933년 지방정부법 제85조 제5항 및 1970년 지방관청사회봉사법 제3조 제1항은 각각 이 조에 의하여 주의회 등이 행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의 적절한 발육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해받고 있거나 등한시되고 있는 경우, 2의 건강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고 있거나 등한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그가 불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2. 당해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이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속한 가정의 구성원인 또는 구성원이었던 다른 소년 또는 청년이 전항에 제기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거나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소년

- 또는 청년이 전항에 제기한 조건을 구비하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a. 1933년법 부칙1에 제기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973년형사법원권한법(the Power of Criminal Courts Act 1973) 제1장에 의한 보석명령 또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의 석방명령이 1933년법 부칙에 의하여 내려진 자를 포함하여 1933년법 부칙1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당해 소년 또는 청년과 동일한 가정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이 항 제1호에 제기한 조건을 구비하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도덕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4.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
5.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1944년교육법상의 취학연령에 달하였으나 그의 연령·능력·적성(및 그의 특별교육필요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시간교육(full-time education)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살인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 ③법원이 어떠한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이 조에 의하여 내린 명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1. 그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고 적절한 통제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2. 감독명령
 3. (잠정조치 이외의)보호명령
 4. 1983년정신건강법 제3장에서 정의한 입원명령
 5. 동법에서 정의한 후견명령(guardianship order)
- ④이 조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전항에 제기한 명령의 1이상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이 조에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전항의 어떠한 명령이 당해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명령이 입원명령 또는 후견명령이 아닌 최초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이 조에 제기한 명령은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내려질 수 없다.
1.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항 제1호에 의한 경우
 2. 1983년정신건강법 제37조에 의하여 동조에 제기한 바와 같이 기소된 자와 관련한 입원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조건을 당해인이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경우

3. 당해인이 16세에 달하였거나 기혼인 경우

⑥이 조에서 “권한있는 자”라 함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및 그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의 임원을 말한다. 이 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보호소송”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관련 청소년”이라 함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준비중인 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제2조(제1조의 보충규정) ①지방당국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또는 발견된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보호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지방당국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또는 발견된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보호소송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거나 공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타인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인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소송을 제기하는 제1조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누구든지 관련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당국에 소송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관계 소년이 어떠한 지방당국의 관할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송의 제기의 원인이 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당국에 소송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상기 규정은 통지를 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방당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법관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손상함이 없이, 보호소송이 제기된 또는 제기될 법원에 관련 아동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1980년치안법원법 제55조 제3항 및 제4항(특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의 제한)은 이 항에 의한 영장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⑤관련 소년이 전항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치되도 법원에 지체 없이 출두시킬 수 없는 경우, 당해 소년을 유치하고 있는 자는

1. 유치된 때로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동안 소년을 안전한 장소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아동이 그러한 협회에 따라 유치되는 것은 합법이다).

2. 법원은 소년에 관한 중간명령을 내리거나 석방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⑥1980년치안법원법 제97조(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소환장 또는 영장의 발부)는 원고심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소송에 대하여 적용된다.

⑦관련 소년과 관련하여 전조 제2항 제2호에 제기한 조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소년에 관한 전조의 어떠한 명령도 내려지지 아니한 곳으로 간주된다.

⑧전조 제2항 제5호에 제기한 조건과 관련하여, 전조 및 이 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항 제2호에서 지방당국이라 함은 지방교육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호소송에서,

1. 법원은 지방교육당국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면,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

2. 관련 소년이 동조건에 제기된 연령에 달하였고 다음의 1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동조건에 제기된 교육을 받고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44년교육법 제37조에 의하여 시행중이지만 현재 이행되지 아니한 취학명령의 대상인 경우

나. 동법 제3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관련 소년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인 경우

다. 습관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자가 동반하고 있는 자인 경우. 다만, 이 항제1호의 규정은 어떠한 증거가 관련 소년과 관련하여 조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⑨법원에 출두하지 아니한 관련 소년에 관한 보호소송이 제기될 법원에 이 항에 의한 신청이 제출되었고 법원이 관련 소년이 5세미만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법원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한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심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소년에 관한 이 항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 신청이 제기된 장소와 시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가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송부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2. 법원이 관련 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⑩관련 소년에 관한 보호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전조에 따라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중간명령

2. 1983년정신건강법 제38조에 제기한 입원중간명령

다만, 제38조에 의하여 동조에 제기된 바와 같이 기소된 자와 관련된 입원중간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이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소년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⑪관련 소년의 보호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아동이 관할구역밖의 약식재판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기각하고 제3조 제5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조에 의하여 거주하는 약식재판구역을 관할하는 소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지시한 때에는,

1. 법원은 당해 소년에 관한 중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시와 관련있는 법원의 서기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년이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당국은 그러한 지시를 21일이내에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⑫관련 소년은 제1조 제3항 제1호에 제기한 명령이 아닌한, 제1조에 의하여 소년에 관하여 내린 명령에 대하여 형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⑬제1조 제3항 제1호에 제기한 명령은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1,000파운드의 금전지급 또는 3년이상의 보호 또는 관련 소년이 3년이내에 18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단기의 보호에 관한 서약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980년치안법원법 제120조(서약위반으로 인한 지급의무)는 당해 명령에 의하여 행한 서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⑭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조에 의하여 관련 소년 소송이 최초로 소년법원에 제기된 때부터 보호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3(제1조 제2항 제6호에 관한 기타 보충규정) ①보호소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소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범죄는 이 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제기한 조건을 시행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소년에 관한 종전의 보호소송에서 그 범죄로 인하여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주장되었던 경우
 2. 범죄가 약식재판대상범죄이고, 이 법 제4조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범죄에 관한 약식재판의 개시기간이 보호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종료된 경우
 3. 이 법 제4조를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소년이 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방면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법규칙에 의하여 석방될 자격을 가지게 될 경우
- ②보호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이 지방당국 또는 경찰관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가 아닌 한, 관련 소년과 관련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및 제1항의 규정은 관련 소년과 관련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증거를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어떠한 보호소송에서 관련 소년이 그 결과로서 범죄요건이 구비되는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경우, 제4조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소송이 당해 소년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정보에 따라 진행되고 법원이 그러한 정보를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졌다면 당해 소년에게 그 범죄로 인한 유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그 범죄의 결과로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항의 상기 규정을 손상함이 없이, 범죄요건이 어떠한 범죄의 결과로서 구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는 유죄성의 유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요한다.
- ④당해 소년과 관련하여 종전에 제기된 보호소송에서 어떠한 범죄의 결과로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주장되었던 경우, 누구든지 그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⑤관련 소년과 관련하여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보호소송에서, 법원은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이송전에 요건의 구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결정은 사건이 이송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⑥법원이 보호소송에서 관련 소년 관련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법원이 이 법 제1조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1. 1973년 형사법원권한법 제35조(신체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의 보상)는 그러한 인정이 유죄에 대한 인정에 해당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조 제6A항 및 제6B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다음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수여되는 금액을 관계 소년을 대신하여 그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를 진다.
 - 가. 부모 또는 후견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나.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⑥A.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심문의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소송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전항에 의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 ⑥B.이 조 제5항에 의하여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용된 경우, 이 조 제5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은 그러한 인용을 한 법원에 갈음하여 사건이송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 ⑦보호소송에서 관계 소년에 관한 범죄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소년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제1조 제3항에 계기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50파운드이하의 지급의무의 서약 또는 1년이하의 근신을 명할 수 있다.

제 2 절 형사소송에서의 추후변경등

제 4 조(소년에 의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의 금지) 소년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5 조(소년에 의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한 제한) ①자격있는 고발인이 아닌 자는 범죄피의자가 청년인 경우 범죄에 관한 고발을 할 수 없다.

②자격있는 고발자는 범죄피해자가 청년인 경우, 관련 사건이 이 조 제4항에 의하여 규정된 종류의 사건이고 부모, 교사 기타의 자에 의하여 또는 경찰관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관련이 없는 지방당국이나 기타 단체의 권한행사에 의하여 또는 이 법 제1조에 계기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사건이 취급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에 관한 고발을 할 수 없다.

③자격있는 고발인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고발인은 전항의 요건이 구비되었고 이 항에 의하여 제시된 소견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계속하여 구비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 항의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있는 고발인이 고발의 제기가 검토중임을 관할지방당국에 통보하였고 당국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소견을 의뢰하였으며

2. 당국이 고발인에게 소견을 제시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소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장관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발권자가 청년인 경우 범죄에 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을 특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그 안이 의회 양원의 승인을 얻어 제정되어야 한다.

⑤고발인이 범죄피의자가 청년이라고 믿을 만한 사건에서 고발인이 행하는 고발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계기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발인이 알고 있는 범죄피의자의 연령을 기재하고

2.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기재한 또는 사건이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된 사건이고 고발인이 제3항의 요건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고발인이 서명한 증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법관들이 수임법관으로서 또는 고발에 대한 심리에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 범죄피의자가 청년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사항에 대한 재고발의 제기를 방해함이 없이 고발을 기각할 의무를 진다.

1. 고발인이 고발당시 고발권자가 아닌 경우

2. 고발이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이 조 제5항 제2호에 계기한 증거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조 <폐 지>

제 7 조(청년범죄자의 처우상의 변경등) ①내지 ④<폐 지>

⑤장관이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명령으로 명시한 일자후에는 어떠한 자를 관인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⑥<폐 지>

⑦이 조 제7A항, 사건을 소년법원이 이송하도록 요구하는 법령 및 1933

년법 제53조 제1항(일정한 중죄인 경우의 구속)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년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청년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권한을 가진다.

1. 그 범죄가 성인이라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인 경우에는(중간명령이 아닌)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감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의견을 얻어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당해 소년 또는 청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고 통제를 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어떠한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이 항에 게기한 다른 명령이 당해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동안 법원이 이 항에 게기한 명령을 내린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사건이송법원은 최초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제2조 제13항은 제2조 제13항에 게기한 명령과 동일하게 이항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⑦A. 법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이 조 제7항에 게기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없다.

1. 당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보호명령이 적합하고

2. 당해 소년 또는 청년이 법원의 보호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호 또는 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⑧1933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법원이 아닌 치안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소년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손상함이 없이, 치안법원이 어떠한 자의 범죄행위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소송이 개시된 당시에 당해인이 청년이었던 경우, 법원은 사건이 다음 각호에 게기한 명령이 1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아니 하는 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청년피의자의 지문채취) ①경위 이상의 경찰간부가 다음 각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출한 경우, 법관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청년에 관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청년을 출석시키기 위한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 당해 청년이 성인의 경우라면 징역형에 처할 죄를 범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다.

2. 이 법 제5조에 의하여 고찰이 제기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청년과 관련하여 이 조 제2항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

②청년이 전항에 제기한 소환장 또는 영장에 의하여 출두한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의한 당해 청년의 지문의 채취를 명할 수 있다.

③1980년치안법원법 제49조 제2항 및 제4항(지문의 채취·말소)은 동조에 제기한 명령에 이 법 제7조의 명령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지방당국에 의한 조사) ①지방당국 또는 지방교육당국이 이 법 제1조에 의한 소송 또는 어떠한 청년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주장되는 범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당해 지방당국 또는 지방교육당국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이 제기된 법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당해인의 가정환경·학교기록·건강·품성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정보를 당해 법원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이 조 제1항에 제기된 법원이 당국에 상기와 같이 조사를 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재조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 당국은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 10 조(소년 및 청년의 특정사항 및 공개에 대한 제한등) ①1933년법 제49조 제1항(특히, 소년 및 청년에 관한 일정한 법원절차의 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되 법원 또는 장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는 때 동조의 요건을 일탈하여 행동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에서,

1. 소송절차에서 청년이라 함은 17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소년법원이라 함은 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치안법원 또는 항소가 제기된 법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49조가 어떠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송절차에서 동조가 적용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법원이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는 당해 소송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감 독

제 11 조(감독명령) 법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자에 대한 감독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의 규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 또는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의 감독하에 두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12 조(감독명령에 요건을 부과하는 권한) ①감독명령은 피감독인으로 하여금 요건에 합의한, 명령에 기재된 자와 함께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의한 감독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은 이 조의 아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요건에 구속된다.

②이 법 제19조 제12항의 규정에 감독명령은 피감독인으로 하여금 감독인이 내리는 지시에 따르고 다음 각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지시에서 특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거주할 것
2. 지시에서 특정한 장소 및 일자에 특정한 사람에게 출두할 것
3. 지시에서 특정한 일자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것

다만, 감독인은 이 항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지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범위와 지시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항에 의한 감독명령으로 부과된 요건은 이 조제4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령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감독명령에 따라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내린 지시에 피감독인이 따라야 하는 총일수는 90일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 항이 시행을 위하여 특정한 그보다 단기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지시가 이행되는 총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감독인은 명령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한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감독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법원이 1983년정신건강법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감독인의 정신상태가 치료를 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법 제3장의 입원명령에 의한 유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법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피감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명령에서 명시하는 등록된 의사의 지시에 의한 치료
2. 명령에서 명시하는 장소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한 치료
3. 1983년법에 정의한 병원 또는 정신요양원의 입원환자로서의 치료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계기한 조건을 감독명령에 포함시킬 수 없다.

1. 법원이 당해 치료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경우, 또한 환자의 수용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자로서의 치료의 경우

2. 14세에 달한 자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당 당해인에 관하여 행하여진 또는 행하여지게 될 명령의 경우

그와 같이 포함된 조건은 피감독인이 18세에 달한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감독인의 지정) 법원은 당해 지방당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감독인이 당해 지방당국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장래에 그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어떠한 지방당국을 감독명령에 의하여 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감독인의 의무) 감독명령에 시행중인 때에는 감독인은 피감독인에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15조(감독명령의 변경·폐지) ①18세미만의 피감독인에 대한 감독명령이 시행중인 동안, 소년법원은 감독인 또는 피감독인의 신청에 따라 이 항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감독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명령에 포함된 조건을 취소하는 방식

2.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더라면 또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면 당해 명령에 포함될 수 있었을 규정을 명령에 포함시키는 방식

②전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피감독인이 17세에 달하였고 감독명령이 이 법 제1조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또는 보호명령이 폐지된 때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③감독명령이 18세에 달한 피감독인과 관련하여 시행중이고 소년법원이 아닌 치안법원이 감독인 또는 피감독인의 신청에 따라 이 항에 계기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감독명령을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명령에 그 유효기간을 명시한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방식
2. 감독인의 지정 또는 선임에 관한 명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당해 법원이 당시에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더라면 명령에 포함시킬 수 있었을 다른 규정을 두는 방식
3. 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명령에 포함된 구역의 명칭을 어떠한 지방당국의 다른 지역의 명칭으로 대체하는 방식
4. 이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계기한 명령에 포함된 규정을 폐지하거나 동조동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에 삽입하는 방식
5. 이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계기한 명령에 포함된 요건을 취소하는 방식

제16조(제15조에 대한 보충규정) ①감독인이 신청을 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뢰하는 경우, 당해 감독인은 피감독인을 법원에 출두시킬 있다. 법원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독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아니하는 한 제15조의 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②이 항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손상함이 없이 법관은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법원에 피감독인을 출두시키기 위한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1980년치 안법원법 제55조 제3항 및 제4항은 적절하게 수정하여 이 항에 의한 영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피감독인이 전항에 따라 발급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그를 구금하고 있는 자는,

1. 체포된 때로부터 72시간이하의 기간동안 안전장소를 그를 유치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
2. 관련 소년이 법원에 상기 기간내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법관에게 출두시켜야 한다.

제17조(감독의 종료) 감독명령은 이전에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에 계기한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명령이 최초로 내려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3년 또는 당해명령에 명시된 3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모든 경우
2. 명령이 이 법 제1조에 의하여 또는 보호명령의 폐지와 더불어 내려졌고 피감독인이 명령일 이전의 일자에 18세에 달한 때에는 당해 일자

제18조(감독명령에 관한 보충규정) ①법원은 피감독인이 어떠한 지방당국

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감독명령을 내릴 수 없다. 법원은 피감독인이 이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명령에 포함된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지방당국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경우, 당해 피감독인의 그와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②감독명령은

1. 지방당국의 관할구역 및 당해 명령을 내린 법원 또는 이 호에 의하여 명령에 포함된 규정을 변경하는 법원이 피감독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게 될 것으로 인정하는 지방당국의 약식재판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이 법 제14조에 의한 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촉진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소정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항 제2호에서 “소정의”라 함은 1980년치안법원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③감독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변경·폐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그 사본을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피감독인 및 피감독인이 소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
2. 감독인 및 당해 명령에 의하여 감독인의 지위를 상실한 자
3. 전호에 의하여 그 사본을 송부받을 자격이 없으나 전항의 감독명령에서 지정되거나 당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지정이 중지된 지방당국
4. 피감독인이 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개인과 동거하도록 요구되거나 치료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당해 장소의 책임자

제19조(제12조에 의한 감독명령에 포함된 감독인의 지시 및 조건의 수행을 위한 시설) ①지방당국의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하기 위한 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그러한 자들과 약정을 하여할 의무를 진다.

1. 이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신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린 지시

2. 이 법 제12조에 의하여 감독명령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는 요건

②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국은 그러한 약정에 관하여 관련 보호관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그러한 약정은 당해 당국이 작성하는 방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④방안은 명시된 일자부터 시행된다.
- ⑤방안을 작성한 당국은 당해 방안과 관련된 관할구역에 포함된 각 약식 재판구역의 담당법관의 서기에게 당해 방안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⑥방안의 사본은 합리적인 기간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방안의 당사자인 모든 당국의 본청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국은 어떠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⑦방안을 작성할 당국은 약정을 변경 또는 대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 ⑧종전의 방안을 대체하기 위한 약정을 명시하는 방안은 종전의 방안을 폐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 ⑨이 조 제7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은 당국이 제1차적으로 관련 보호관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⑩방안을 작성한 당국은 이 조 제7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방안의 통지서에 명시된 이 조의 약정과 관련된 지역에 포함된 약식 재판구역 담당법관의 서기에게 방안의 시행일, 효과, 신규 또는 변경된 약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⑪어떠한 시설의 제공에 관한 약정은 그 시설이 장관에 의하여 이 조의 실시를 위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체결될 수 있다.
- ⑫감독명령을 내린 법원이 이 조의 방안이 피감독안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게 될 구역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감독명령은 이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지시는 이 중에 의하여 당해 구역에 시행중인 방안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을 정할 수 없다.

제 4 절 지방당국 보호의 위탁

제20조(지방당국 보호의 위탁에 관한 명령) ①어떠한 자에 관한 보호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의 규정은 당해인을 지방당국의 보호에 위탁하는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에서 보호명령이라 함은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며 “중간명령”이라 함은 28일 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일자로부터 기산한 그 이하의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당해 명령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보호명령을 말한다.

1. 명령을 법원이 내린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내린 일자

2. 명령을 치안사법관이 내린 경우에는 당해인이 당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로 법정구금상태에 있었던 일자

②보호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바와 같다.

1. 중간연령의 경우가 아닌 한, 명령을 내린 법원이 당해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당국 또는 법원이 당해인이 어떠한 지방관청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가 수행되거나 당해 명령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당국

2. 중간연령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법원 또는 치안사법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이 항제1호에 계기한 지방당국의 1

③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명령이 아닌 보호명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당해인이 명령이 최초로 내려질 당시 18세에 달한 경우에는 19세가 되는 때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인이 18세에 달한 때

④지방당국 또는 경찰관은 명령과 관련된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의하여 그 보호를 위탁받은 당국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제21조(보호명령의 변경 및 폐지) ①전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보호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의 신청에 따라, 소년법원은 당해인이 공동체가정 또는 장관이 제공하는 가정에 수용되어 있고 정신상태 또는 품행으로 인하여 당해인이 18세에 달한 후에도 계속하여 수용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명령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당해인이 법원에 출두한 경우에만 이 항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보호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인의 신청에 따라, 소년법원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소년법원은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와 더불어 당해 명령이 중간명령이 아닌 한 또한 당해인이 18세미만이 아닌 한, 당해인에 관한 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이 조제2항에 의한 보호명령의 취소에 대한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1. 중간명령의 경우, 소년법원의 동의가 없는한 제2항에 의하여 명령의

취소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기타의 경우, 소년법원의 동의가 없는 한, 기각일로 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어떠한 자가 이 항에 의한 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④보호명령의 대상이 된 자는 형사법원에 이 조 제1항에 의한 명령, 이 조 제2항에 의한 감독명령 또는 보호명령의 취소에 대한 제2항의 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⑤보호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은 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명령이 내려진 당시 당해인이 항소장에 명시된 다른 지방당국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관할구역을 명시한 명령의 규정에 대하여 형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지방당국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지방당국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가 아니면 이 항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⑥이 조에서 소년법원이라 함은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보호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에 의하여 어떠한 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의 관할 소년법원 또는 당해인이 거주하는 장소의 소년법원을 말한다.

제22조(중간명령에 관한 특별규정) ①소년법원 또는 치안사법관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중간명령을 내릴 수 없다.

1. 당해인이 법원 또는 치안사법관에 출두한 경우

2. 법원 또는 치안사법관이 당해인이 5세에 달하지 아니하였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출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②중간명령은 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명령이 종료한 때 명령에 명시된 법원에 출두시키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지방당국으로의 위탁) ①어떠한 법원이,

1. 살인으로 기소된 소년의 심리를 위한 위탁 또는 재구속을 행하거나 살인의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을 구치소에 구치하는 경우 또는,

2. 1 또는 2 이상의 불법행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소년을 심리 또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로서, 당해인이 보석으로 방면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당해인을 거주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지역 또는 당해 불법행위가 행하여졌다

고 판단되는 지역의 지방당국의 보호에 그를 위탁할 수 있다.

②그러나 법원이 그 소년이 극히 다루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당국의 보호에 위탁되기에는 안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그러한 성격 및 연령의 자를 법원으로부터 인수하는데 어느 소년구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소년을 소년구치센터에 위탁시켜야 하며, 그런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이 조제1항의 영장에 의하여 어떠한 소년의 보호를 위탁받은 지방당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그가 잠시 거주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치안법원이 이 조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된 상기 제2항의 규정은 당해인에 적용되며, 상기 제1항에 의한 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④이 조의 상기 규정들은 1952년치안법원법 제28조에 계기한 재판 판결에 회부할 목적으로 4계재판소(quarter sessions)에의 이송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폐지>

제 25 조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간의 이송) ①장관은, 적격자 판정명령 또는 훈련학교입교명령에 의하여 피위탁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의 어떠한 지방당국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학교의 교장의 신청에 따라 피위탁자를 당해 지방당국의 보호에 위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중간명령 이외의 보호명령에 의하여 보호위탁을 받은 지방당국의 신청에 기하여 그 피보호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북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북아일랜드담당장관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될 지역의 복지기관 또는 훈련학교의 관리자의 보호하에 당해 피보호자를 위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1968년 청소년법(북아일랜드) 규정은 (제83조 제3항 제1호, 제88조 제3항, 제90조는 제외) 명령이 보호명령 또는 적격자 판정명령이 내려진 훈련학교 입교명령이 것과 동일하게 이 항의 어떠한 명령에도 적용된다. 이 항에 의한 명령이 어떠한 자를 훈련학교관리자의 보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기 1968년법 제161조하에 당해 피보호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기여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판

단되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③어떠한 자가 이 조에 의한 어떠한 명령에 따라 지방당국 또는 복지기관이나 훈련학교관리자의 보호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이 조에 의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인 훈련학교입교명령, 적격자판정명령 또는 보호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 조에 의한 명령은 사전에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의한 명령인 경우 아래의 일자 이전에, 즉, 그 명령의 대상인 자가 19세에 달한 일자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상기의 적격자판정명령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기와 기술학교입교명령에 의하여 구금기간이 종료하는 일자 이전에 종료한다.

2. 제2항에 의한 명령인 경우, 상기한 보호명령이 기간의 만료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 즉,

가. 당해 명령의 대상이 된 자가 명령에 의하여 복지기관에 위탁되었고 그 일자 이전에 18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일자

나. 그 명령이 어떤 훈련학교입교명령으로서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며 명령에 따라 당해인 구금 후의 감독기간이 그 날짜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 종료한다.

④이 조에 의한 명령은 경찰관 또는 지방당국 또는 복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훈련학교의 관리자가 그 명령의 대상인 자를 명령에 의하여 보호를 위탁한 기관 또는 관리자의 보호하에 인계될 때까지 북아일랜드 내에 구금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의 근거가 된다.

⑤이 조에서 “훈련학교”, “훈련학교입교명령” 및 “복지기관”이라 함은 1968년법에 있어서의 의미와 동일하며, “적격자판정명령”이라 함은 어떠한 적격자의 보호에 일정한 자를 위탁하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의미한다.

제 26 조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와 체널諸島 또는 맨島간의 이전) ①장관은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명령을 지정할 수 있다.

1. 「맨」섬 또는 체널諸島의 법원이 잠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명령

2.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공공기관의 보호에 위탁하는 것을 규정하는 명령

3. 장관이 중간명령이 아닌 보호명령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명령

이 조에서 관련명령이라 함은 상기와 같이 잠정적인 종류의 명령을 의미하며, 관련 명령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이라 함은 맨도 또는 체널제도의 법률에 따라 당해 명령과 관계있는 자의 보호를 명령으로 위탁받은 당국을 뜻한다.

②장관은 권한위임시 지정된 자를 지방당국의 보호에 위탁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권한위임이 어떠한 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동안, 아래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인은 지방당국의 보호에 위탁하는 보호명령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③이 법은 이 조에 의한 권한이 그와 관련하여 행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및 제31조가 누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조에 의하여 지방당국에 위임된 권한은 다음 경우에 효력이 중지된다.

1. 장관이 권한 위임을 취소하였음을 지방당국에 통보한 때
2. 권한위임과 관계있는 관련명령이 명령이 제정된 지역의 법령에 의한 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동명령이 상기 법률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관계당국이 지방당국에 통보한 때

⑤관계명령과 관련된 자가 관계당국의 보호에 재위탁된 경우, 또한 관계명령과 관련있는 자를 이 조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방당국이 당해인을, 관계 당국의 보호에 재위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지방당국을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27조(1948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부수적인 개정) ①내지 ③〈폐지〉

④상기의 일반적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총 6개월 기간이 만료한 후 가급적 신속하게 보호중인 소년의 사건을 심사할 것인지의 여부와 당해 소년에 관하여 보호명령이 유효한 경우 상기 심사과정중에 동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상기 6개월 기간 중 계속 당해 소년을 보호하여 왔고 동기간동안 이항에 따라 당해 소년의 사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지방당국의 의무이다.

제28조(청소년의 안전장소 수용) ①어떤자가 당국에 청소년을 수용하고 안전장소에 인도하도록 법원에 신청한 경우, 당해 법원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청소년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2. 이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당해인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발견하거나,

3. 1933년법 제25조(동 규정은 청년 연예인의 해외파송을 규제한다)를 위반 청소년이 영국을 출국하고자 한다.

또한 이 항에 따라 청소년에 관한 권한부여를 하였을 때, 권한부여일로부터 28일동안 또는 동권한 부여시 정할 수 있는 일자부터 기산하여 28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기 청소년을 권한부여에 의거하여 안전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조건이 구비되었거나 당해 법원이 이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발견하거나 경찰관이 1933년법의 제10조 제1항(동규정은 청소년을 도처로 끌고 다니는 부랑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의 위반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그 경찰관은 당해 청소년을 구금할 수 있다.

③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라 어떠한 자를 구금하고 있는 자는, 수용후 지체없이 본인에게 구금이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당해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당해인을 구금한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자를 구금한 경찰관 또는 살인이외의 혐의로 소년을 영장없이 체포한 경찰관은 구금 또는 체포후 지체없이 경감급 이상의 경찰관 또는 경찰서 책임경찰관이 동사안을 심문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상기 경찰관을 심문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청소년을 석방하거나,

2. 경찰관이 당해 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체포된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성질상 당해인의 구금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 안전장소에 구금하고 당해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이 법의 제5항에 따라 법원에 대한 신청권리를 당해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한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청소년을 상기조치에 따라 구금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⑤살인혐의 이외의 이유로 영장없이 체포된 소년을 그러한 체포 또는 상기 조치의 결과로서 구금한 것은 불법이며, 어떠한 자를 이 조 제2항 또는 상기 조치에 의하여 체포된 날로부터 또는 전술한 제2항에 따라 당해인의 구금을 개시한 날로부터 8일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 계속하여 구금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동기간중 청소년이 법관에게 석방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관은 동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당해인의 위반혐의의 성질상 이유로 구금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당해인을 석방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⑥이 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중간명령에 관한 신청을 치안판사 또는 법관에게 제출할 경우, 동 치안판사 또는 법관은 그러한 명령일 내릴 수 있으며, 기각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지체없이 석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9조(체포된 청년의 석방 또는 수용연장) ①어떠한 자를 영장에 의하여 또는 영장없이 체포한 후 지체없이 치안법원에 회부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인을 이송받은 경찰서의 책임경찰관 또는 경감 이상의 다른 경찰관은 지체없이 당해 사안을 심문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수용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인이 살인 기타 중죄를 범하였거나 당해인이 석방이 정의의 목적에 반하거나 당해인의 석방되는 때에는(당해인이 영장없이 체포된 때에 한함) 당해인이 혐의사실에 대하여 출석·답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1. 당해인이 소년이며 그 체포가 살인혐의에 의한 경우
2. 당해인이 청년이며 그 체포가 경범죄에 의한 경우

②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상기 경찰관은 당해인이 혐의 사실에 심문을 출석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서약을 당해인 또는 당해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증인과 함께 또는 증인없이)이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따라 석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에 따라 행한 서약은, 경찰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체포된 자 이외에 당해 부모 또는 후견인을 심문에 출석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하 생략〉

* 「각국의 청소년 관계법」(법제자료 제155집), 법제처, 1990, pp. 49~88.

2. 청소년보호법(독일)

(Jugendschutzgesetz)

(1985년 2월 25일 제정)

제 1 조(청소년유해장소에의 체류)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소에 청소년이 체류하는 경우에 관할행정관서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할행정관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을 할 수 있다.

1. 그 청소년에게 당해장소를 떠나도록 종용하는 것
 2. 그 청소년을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 또는 양육권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을 청소년관서의 보호하에 두는 것
-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관서는 당해유해장소에 관하여 청소년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조(개념정의: 증명) ①이 법률에서 소년이라 함은 14세미만의 자로, 청년은 14세이상 18세미만의 자로 한다.

②이 법률에서 양육권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친권을 갖는 자
2. 친권자와의 합의로 친권을 대리하거나 교육의 범위내에서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청소년복지사업의 범위내에서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타의 자

③이 법률에 의해 양육권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2항 제2호의 자는 사업주인의 요구가 있으면 제2항제2호의 권한 있는 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 업소주인은 그 권한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이 법률에 의한 한계연령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청소년은 요구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만연령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소주인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만연령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이 법률은 결혼한 청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①음식점체류는 양육권자의 동반이 있는 경우에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허용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사업의 승인된 주최자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이 여행중에 있는 경우

3. 청소년이 식사나 음료를 취하는 경우

②16세 이상의 청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24시까지 음식점에 체류할 수 있다.

③청소년은 야간주점 또는 나이트클럽(Nacht Club) 및 유사 위락업소에 체류할 수 없다.

제 4 조(주류) ①공개된 음식점 또는 판매소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마시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주(Brantwein), 소주함유음료 또는 소량의 소주만을 함유하고 있는 식료품

2.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1호 이외의 주류

②제1항 제2호는 청년이 친권자(Personensorgberechtigten)와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된 장소에는 자동주류판매기를 둘 수 없다. 다만, 자동판매기가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공간내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한 장치 또는 상시적인 감독에 의하여 18세미만의 청소년이 자동판매기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음식점법(Gaststättengesetz) 제20조 제1항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5 조(공중무도장) ①16세미만의 청소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공중무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의 청년은 24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②제1항과는 달리 청소년복지사업의 승인을 받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무도장 또는 예술활동이나 전통행사에 이용되는 무도장의 경우에 소년은 24시까지, 16세미만의 청년은 24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③청소년관서의 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제 6조(공중영화장) ①영화가 상급주행관청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상영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소년도 공중영화장에 출입할 수 있다. 6세미만의 소년은 양육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관람이 허용된다.

②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영화는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

③상급주행정청은 영화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나이 제한없음

2. 6세부터 허용

3. 12세부터 허용

4. 16세부터 허용

5. 18세부터 불허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가 형법전 제131조 또는 제184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 영화를 관할형사소추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 제1호의 경우에 양육권자의 동반이 없는 공중영화장의 관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년의 경우에는 20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2. 16세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22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3. 16세이상의 청년의 경우에는 24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기록물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영화의 공개상영에 대해 적용한다. 선전자막 및 특별프로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은 그 영화가 비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범위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영화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제1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공연영상물) ①공연된 녹화물, 영상음반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은 당해프로그램이 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연령별 제한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표시된 경우에만 청소년의 공연한 접근이 허용된다.

②제6조 제2항과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은 연령별제한의 해제 및 그의 표시에 준용한다. 연령별등급은 위조방지된 부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상물이 상인에게 인도되거나 기타 상업적이용에 제공되기 전에 영상물과 그 포장에 동부호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18세미만 불허”로 표시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에 대한 제공, 양도 기타 접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영업소 이외의 소매상, 가판점, 통지할 의무없는 기타의 판매소 또는 수출상에 제공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공연된 영상물은 자동판매기에서 공연하게 판매할 수 없다.

⑤상급주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서 제6조 제3항 제1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영상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6조 제3항 제2문은 준용한다.

제 8 조(도박·오락기) ①청소년은 공중도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사행장소(ähnliche vorwiegend dem Spielbetrieb dienenden Räumen)에 출입할 수 없다.

②사행행위의 성과가 사소한 가치의 것인 한도에서 청소년은 국민축제, 사격대회, 대목장, 특별장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 사행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③기대이익이 없는 전자화면오락기를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청소년이 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통행지역

2.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상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영업장소 등의 출입구 또는 부속실

④공연하게 유상이용에 공하여진 기대이익없는 전자화면오락은 양육권자의 동반이 없는 한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성적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전쟁의 찬양 또는 무해성을 고무하는 오락기는 청소년이 공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제 9 조(공연한 흡연)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공연한 흡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유해행사에의 참여배제) 어떠한 공개행사 또는 영업에 제3조 내지 제8조의 적용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하는 제1조 제1문이 규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할행정청은 그 행사의 개최자 또는 영업주에게 청소년의 참여배제를 명할 수 있다. 위험을 제거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참여배제명령은 한계연령자를 포함한다.

제11조(제한의 고지 : 청소년유해광고) 행사개최자 또는 영업주는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해서 그의 영업시설 및 행사에 적용될 법규정과 영화의 등급을 쉽게 알 수 있는 게시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업주는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을 고지하기 위하여 제6조 제3항 제1문의 표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급주행정청이 제6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표시한 영화 또는 영상물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법으로 선전·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질서위반) ① 행사의 개최자 또는 업주인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질서위반으로 한다.

1. 제3조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음식점에 체류하게 한 때
2.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류 또는 주정함유식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취음하게 한 때
3. 제4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주류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4.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공중부도장의 입장을 허용한 때
5. 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그의 연령등급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영상물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때
6. 제7조 제1항에 반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연령등급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된 녹화물체의 접근을 허용한 때
7. 제7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에 위반하여 동항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급행정청에 의한 연령등급에 상반되는 표시를 부착한 때
8. 제7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여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한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때
9. 제7조 제4항에 위반하여 공연된 영상물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10.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중오락장 기타 동조동호에 계기한 장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11.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도박참가를 허용한 때
12.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오락기를 설치한 때
13.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락기이용을 허용한 때
14. 제9조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공연한 흡연을 허용한 때
15. 제10조에 의한 집행가능한 명령에 위반한 때
16. 제11조 제1문에 위반하여 영업시설 또는 행사에 대해 적용될 법규정을 동규정에 의한 게시물로 공고하지 아니한 때
17. 제11조 제3문에 위반하여 제6조 제3항 제1문에서 규정한 부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18. 제11조 제3문에 위반하여 선전 또는 광고시에 청소년유해내용을 게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법으로 선전·광고를 한 때
- ②18세이상인 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한 금지 또는 제7조 제3항 제1호의 금지를 통하여 제10조에 의한 집행가능한 명령을 통하여 제지되어야 할 청소년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권장한 때에도 질서위반으

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의 금지와 관련하여 친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질서위반은 최고 30,000도이치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행사의 개척자 또는 영업주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또는 도덕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때
2. 제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때

* 「각국의 청소년 관계법」(법제자료 제155집), 법제처, 1990, pp. 185~195.

3. 소년복지법(중화민국)

(중화민국 78(1988) 1·23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법은 소년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년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소년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이 법의 소년이라 함은 12세이상 만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 3 조 소년복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은 내무부
- 성(시)은 성(시) 정부의 사회처(국)

제 4 조 직할시 및 현(시)정부는 소년복지업무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하며, 소년복지업무 담당직원의 수는 각 직할시 및 현(시)의 인구수 비례로 정하고, 인구 50만마다 최소한 3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3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①각급 주관기관은 협조, 연구, 심의 자문 및 소년복지 추진을 위하여 소년복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년복지추진위원회의 조직규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 6 조 소년복지경비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1. 각급정부 년도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2. 개인 또는 년도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제 7 조 ①성(시), 현(시)정부 또는 민간단체는 각계와 연합하여 소년복지기금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

②그 모금 운용방법은 각 해당 정부에서 정한다.

제 2 장 복리조치

제 8 조 ①연수 또는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그 성향 및 지원에 따라 연수를 시키거나 직업훈련 또는 취업을 시켜야 한다.

②고용주는 소년공원에 대하여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조 ①가정의 중대한 변고로 인하여 그 유지할 수 없는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지역 주관기관에 소년의 보호나 지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당해지역 주관기관은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이 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의 상황이 사실로써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해당소년을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으로부터 격리하여 적합한 보호 및 안치(安置)하여야 한다.

1. 학 대

2. 악의의 유기

3. 인신매매

4. 부적합한 직업 또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압하거나 또는 유인할 때

5. 기타 친권행위의 남용

③제2항에서 “소년의 안치”라 함은 당해지역 주관기관이 가정의탁 또는 복리기구에의 수용을 말하며, 주관기관은 의탁 또는 수용에 따르는 필요비용을 의탁가정 또는 수용복리기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및 복리기구의 책임자 또는 개인은 전3항의 규정에 의거 소년의 안치, 지도, 보호, 양육, 수용 및 교육기간 동안에 소년에 대한 감호권을 갖는다.

⑤이혼부모의 소년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 소년본인, 그 부모, 검찰관 또는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거 소년에 이익이 되도록 적당한 감호인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그 부모에게 소년의 보호, 양육에 따른 적당한 비용을 납부토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소년 또는 재학생인 소년을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그 부양의무자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을 때에는 주관기관은 사회구조 관련법규에 따라 생활보조 또는 의료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은 주관기관 또는 소년복리기구가 본법이 규정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리기구

제12조 ①각급주관기관은 소년복리사업을 위하여 소년의 교양, 협조 및 지도, 서비스 음악등의 복리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각급 주관기관은 불우청소년의 수용, 교양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야 하며 필요시에는 앞에 열거한 복리기구와 병설할 수 있다.

제13조 ①소년복리기구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지역 주관기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주소의 성질 및 규모
3. 업무계획
4. 경비출처 및 예산
5.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경력

②해당지역 주관기관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중앙주관기관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3조에 의거 복리기구 설립의 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단체는 주관기관의 허가후 6개월 이내에 재단법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재단법인 등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기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재단법인 등기를 연장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5조 ①소년복리기구는 내년도 예산, 결산서와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소년복리기구에 대하여 지도, 감독,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관기관은 우수한 사립복리기구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량복리기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개선통지를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년복리기구의 업무는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호

제18조 ①소년은 흡연, 음주를 할 수 없다.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은 소년이 음주, 흡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담배, 술영업의 책임자 또는 종업원은 소년이 마시거나 피울 술·담배

등을 팔아서는 안된다.

제19조 ①소년은 술집, 빠, 카바레, 특종커피집, 찻집 및 기타 소년의 심신 건강을 해칠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②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보호인은 제1항의 장소에 소년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업주 또는 종업원은 소년의 출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은 소년이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및 마취제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며, 소년이 폭력 및 외설관련 영화, 비디오 잡지 등의 관람 또는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1조 ①소년은 제19조 제1항의 장소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청소년 심신발전에 악영향 또는 위해로운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②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은 소년이 제1항의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③누구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제1항의 행위를 시키기 위하여 이용·고용 또는 강압적으로 유인할 수 없다.

제22조 ①제9조 제18조내지 21조의 청소년 심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관기관, 경찰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찰(신고)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는 통지(신고)접수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로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넘겨 처리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소년이 매음행위 또는 영업성 난잡행위에 종사할 때에는 소년을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2주-1개월간 지도, 관찰토록 하고, 만약 소년으로부터 소년사건처리법 제3조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지방법원 소년법정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소년법정은 전3항의 사항이 소년에게 해당된다고 인정되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항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년을 전문기구에 안치하여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안치된 소년이 성병환자인 경우 강제치료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필요시 그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이 소년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의 행위를 하도록 할 때에는 검찰관, 소년의 친속, 주관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는 법원에 그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의 감호권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년의 양부모는 법원에 양부모관계를 해제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전항 규정에 의거 감호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법 제109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관기관 또는 소년복지기구의 책임자 또는 기타 적합한 자를 소년의 감호인으로 지정한다.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소년에 대하여는 그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역 주관기관이 적당한 소년복지기구로 하여금 지도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후회나 개선할 줄 모르는 자.
2. 올바른 삶에 대한 교육관리에 불복하는 자.
3. 품행이 저질이며 방탕한 자.

제 5 장 벌 칙

제25조 담배, 술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소년자신이 마시거나 피울 담배, 술을 팔았을 경우 200원이상 2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①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이 소년이 술집, 카바레, 빠, 특종커피집, 다방 및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200원이상 1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성명을 공고한다.

②제1항 장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이 소년출입을 방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업주에게 2천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필요시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7조 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이 소년이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마취제를 복용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도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원이상 2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성명을 공고한다.

제28조 ①소년의 부모, 양부모 또는 감호인이 소년이 제21조 1항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금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1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성명을 공고한다.

②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천원이상 1만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성명을 공고한다. 그 행위가 형법에 저촉될 경우

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29조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용할 법률이 이 법보다 강한 처벌규정이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규정의 법률을 적용
한다.

제30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벌칙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납부독촉
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토록 한다.

제 6 장 부 칙

제31조 이 법의 시행규칙은 중앙기관이 정한다.

제3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청소년 백서」, 서울 : 청소년육성위원회, 1989, pp.443~448., 「청소년관계 법령집Ⅱ」,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1791~1794에서 재인용

4.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 (스웨덴) (Ordinance With Instructions for the State Youth Council)

(1989년 11월 3일)

직 무

제 1 조 국가청소년심의위원회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조건의 개발에 대한 보고와 아동과 청소년의 레크레이션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 2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관할구역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정부를 도와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조정하는 일
2. 소집단과 단체의 개발과 청소년의 조건에 관한 연구활동과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일
3. 청소년에 관한 조사, 개발,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수집하는 일

제 3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루어야 하고 다른 부서의 책임이 아닌 한, 보조받은 활동의 경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특별한 지시에 따른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4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아동 및 청소년단체, 기타 단체, 그리고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 성

제 5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최대 1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중의 한 사람은 의장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의장이 된다.

조 직

제 6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한명의 행정관리관 의해서 관리되는 사무국을 갖는다.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 7 조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1987 : 1100)에서 다음 규정은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적용된다.

제14조와 제15조 국가당국에 의한 규정제정

제16조 내부규정

제17조 정보수집

제18조 소관사항에 관한 기록보관

제27조 질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

제28조 명료화의 요청 등

제29조 당국의 결정

제 8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정부사무소에 관한 법령(1987 : 1100)속에서 제 4조~제7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3조에서 주어진 활동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업의 운영

제 9 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의장과 적어도 다른 위원의 절반이 출석할 때 회의의 정족수가 된다. 보다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질 때에는 가능한 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 만약 청소년심의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다들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일이라면 의장과 적어도 정족수에 필요한 만큼의 위원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이 부적합할 경우 의장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1조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성질상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을 한명이나 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절차의 규칙이나 특별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는 보고서의 제출후에 결정된다. 그러나 주어진 규정이나 특별한 결정에 따라 제11조에 따라서 결정된 사무는 보고서제출이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

임명과 기타 사항

제13조 위원은 정부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임명된다. 정부는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은 일정한 기간동안이다.

제14조 행정관리관은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다른 직원은 청소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제15조 공무원법(1965 : 601) 제37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이익 혹은 직업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심의위원회와 행정관리관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의 신청

제16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위한 국가보조의 할당에 관하여 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이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다면 정부에 할 수 있다.

- 어떤 사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행정법원당국에 관한 법률(1971 : 309)
- 이의신청의 제한에 관한 법률(1987 : 439)
- 다른 법령

이 법령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청소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시법령(1976 : 527)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외국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 258~260.

5. 청소년종합서비스법안(미국)

(Coordinated Services for Americans Act of 1990)

제 1 조(약칭) 이 법은 “1990년 미국청소년 종합서비스법”으로 약칭한다.

제 2 조 ①청소년들은 천부적으로 미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②청소년의 복지, 보호,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역할은 미국에 필수적이다.

③청소년들은 건강, 주거, 음식, 교육, 생산적인 고용기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 뿐만 아니라 사랑, 존경과 인도를 받을 가치가 있다.

④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⑤가정은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보호자이고 사회학습의 원천이며 충분히 지원받고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⑥가정이 5항에서 말한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사회는 그러한 가정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⑦연방정부, 각 주, 각 주의 정치적 하위기구와 청소년들이 다음 각 호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1. 최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2. 적절하고 안전한 물리적 공간
3.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
4. 효과적인 훈련, 실습, 지역사회 사업에의 참여기회, 생산적 고용
5.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신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일반, 문화 오락활동
6. 청소년가정을 포함하는 능률적이고, 조정되며, 유용하고 실용적인 폭넓은 지역사회사업
7. 청소년들이 삶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
- ⑧ 연방, 주, 지방정부기관, 청소년조직과 기타 자원조직체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청소년들을 위하여 폭넓은 국가정책은 필요하다.

〈중간생략〉

제81조(약칭) 제3부는 “1990년 청소년에 관한 백악관회의 법”으로 약칭한다.

제82조(생략)

제83조(대통령과 사무국의 권한) ①(위원회의 설립) 대통령은 청소년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청소년과 82조에 기술된 목적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에 관한 실천행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1 미국청소년 백악관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계획) 보건복지사무국(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지도아래 회의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청소년, 가정과 관계있는 행정위원과 기타 연방부서와 기관의 장과 협력한다. 그러한 협조는 인사조정을 포함한다.

③(회의의 기능) 청소년들의 기술의 사용과 경험, 기상, 환경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1. 연방, 주, 지방정부의 대표
2. 청소년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
3. 가정과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일반시민대표

④(보고서)

1. 일반사항 : 회의가 휴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무국은 회의에서 얻은 결과와 권고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용 : 사무국은 보고서에 청소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안과 함께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관한 폭넓고 논리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공포 : 사무국은 즉시 국민에게 유용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권고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무국은 보고서에 담고 있는 권고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정을 위한 권고안을 대통령과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 ①(사무국의 임무) 이 세부 사항을 수행하는데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일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시기에 연방부서와 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2.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에 관련된 주·지방기관과 회의에 앞서 회의를 조직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타 적당한 조직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회의에서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자료를 만들고 준비한다.
4. 적절한 시기에 특정 회의의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한다.
5. 경쟁적인 사업에 있어서 임명에 관한 미법전 법령 5조항과 분류와 지

불률 계획 (CLASSIFICATION AND GENERAL SCHEDULE PAY RATES)에 관련한 법령 51장과 53장의 III에 관계없이 이 세부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한다.

②(자료) 이 사항에 의해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무국은 회의개최에 앞서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청소년에 관련한 연방프로그램과 정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함께 청소년복지에 유용하고 적절한 통계자료 및 기타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과 협약) 이러한 세부조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은 사적 비영리조직과 공공기관에게 보조금을 증여하고 협약에 착수해야 한다.

제85조(위원회) ①(자문위원회) 사무국은 적절한 시기에 아동, 청소년, 가정에 관계하는 연방의회의 대표와 기타 공공기관 및 사적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회의에 설립한다.

②(기타 위원회) 사무국은 회의를 계획, 시행,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1. 임명권 : 사무국은 이 사항에 의해 설치된 각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을 임명한다.

2. 위원회 구성 : 이 세부사항에 의해 설치된 각 위원회는 저소득 집단과 소수집단을 포함하는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최소한 각 위원회의 일반회원의 1/5은 21세이하이어야 한다.

④(보 상)

1. 일반비용 :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연방정부의 관리자나 고용인들과는 달리 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무국의 요구에 의해 일을 하는 동안 사무국에 의해서 고정적 비율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미연방법령 제5의 5332조에 의거한 GS-18(GS-18 under section 5332 of title 5, UNITED STATE CODE)에 규정된 일상적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행비용 : 위원은 집을 이탈하거나 정기적인 거래처에 있는 동안, 연방정부사업에 의해 간헐적으로 고용된 개인을 위한 법령 5703조에 의해 인정된 생활유지수당을 포함하는 여행경비를 인정받는다.

제86조(지출금의 인정) 각각 1991년과 1992년에 이 세부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인정한다.

* 이 법안은 1990년 1월에 미국 국회에 제출된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중 제3부에 해당하는 미국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 관련 조항을 발췌 번역한 것임.

Ⅲ. 청소년관계 훈령예규

1. 체육청소년단체심의위원회규정
2.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3. 청소년육성기금 융자규정
4.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상담자문위원회
운영규정
5. 체육청소년부 표창규정

1. 체육청소년단체심의위원회규정 [1989. 5. 30 체육부훈령 제38호]

개정 1991. 2.13 체육청소년부훈령 제50호

제 1 조(설치) 체육·청소년 법인단체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부에 체육·청소년단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청소년정책조정실장, 체육진흥국장, 체육지도국장, 국제체육국장, 공보관, 비상계획관, 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이 된다.

제 3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심의·조정한다.

1.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처부규정(보수, 직제)의 제정 및 주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체육·청소년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광고사업, 복표발생, 부가모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
5. 체육·청소년기금의 사용계획 변경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교환, 증여 등) 승인에 관한 사항

②기타 체육·청소년의 중요정책 결정등에 있어 장관 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 5 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위원장에게 소관사항중 심의를 요하는 안건을 회의 2일전까지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의견의 청취) ①위원장은 관계위원에게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8 조(보고) ①제안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사항을 따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중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간사)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 10 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89. 5.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2.13>

이 규정은 199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 [1989. 10. 31] 체육부훈령 제4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중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체육청소년부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의의 소집)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의사)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심의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정식으로 심의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부 시설기금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89.10.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1 9 9 1. 8. 6} 체육청소년부훈령 제57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육성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정한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방법중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융자지원지침)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된 후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지침(이하 “융자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도 및 청소년육성기금융자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융자지원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대상사업의 종류
2. 융자규모·조건 및 시기
3. 융자대상자의 자격
4. 대상사업별 융자한도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조(기금의 대하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 선정) ①기금은 “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게 한다.

②제1항의 취급금융기관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한다.

제 4 조(융자지원공고) 융자지원지침을 시달받은 취급금융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지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융자추천신청 및 통보)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그 융자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청소년단체는 직접 융자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1. 융자추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체육청소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를 추천한다.

③체육청소년부장관은 전항의 융자를 추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용자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기금의 용자추천비율 및 범위)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의 일정규모 범위안에서 소요자금의 50%까지 용자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의 일정규모 범위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한다.

제 7 조(기금의 용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추천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금융기관에 기금의 용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용자) ①취급금융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추천을 받은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출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추천대로 기금을 대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대출기간) ①기금의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전용수련시설의 건립 : 2년거치 5년상환

2. 기존 청소년전용수련시설의 보강 : 5년상환

②취급금융기관은 용자수혜자로부터 천재지변 기타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체육청소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상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대출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출금 상환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하 및 대출의 금리) ①기금의 대하금리는 취급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취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년 8%로 한다. 단,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등)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용자를 받은자가 용자금 및 용자금으로 조성된 시설을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원리금을 조기에 회수토록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시·도지사는 기금용자대상자의 사업현황을 지도·감독·확인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용자추진현황 및 원리금 상환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1. 8.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체육청소년부청소년상담자문위원회 운영규정

[1991. 5. 28]
[체육청소년부훈령제55호]

제 1 조(설치) 청소년상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체육청소년부청소년대화의광장(이하 “청소년대화의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상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처리한다.

1. 청소년상담에 관한 주요정책 입안사항
2. 청소년상담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화의 광장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전문적인 상담
4.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상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상담내용에 따라 관련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담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회의) ①회의는 필요시 장관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장관은 필요시 일부 위원들만이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해 상담을 처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간사)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육성과장이 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임기중 또는 임기후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부 칙(91. 5.28)

1.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5. 체육청소년부표창규정 [1982. 4. 9 체육부훈령 제1호]

개정 1983. 11. 9 체육부훈령 제18호
1988. 8. 13 체육부훈령 제31호
1990. 11. 8 체육부훈령 제46호
1991. 4. 18 체육청소년부훈령 제5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과 표창을 행함에 있어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는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표창시기) ①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모범 및 우수공무원 표창 : 연1회
2.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연1회(개정 : 88. 8. 13)

③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순직자의 표창
2. 의전상 관계적인 서훈
3.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및 성적우수자
4.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적극 협조한 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개정 88. 8. 13)

제 3 조(표창의 추천) ①표창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총무과장 및 산하 각 기관의 장과 표창의 추천을 의뢰받은 자가 행한다. 다만, 산하 각 기관의 장은 부내 각실·국장과 총무과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그 산하 직원이 아닌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직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삭제 88. 8. 13)

⑤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 및 총무과장이 행한다.

제 4 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인 체육청소년부장관 소속하에 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청소년부차관이 되고 심사위원은 각 실·국장·공보관·비상계획관·청소년기획관·청소년협력관·감사담당

관 및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8. 8. 13, 90. 11. 8, 91. 4. 18)

③간사는 인사담당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④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를 선발 결정한다. 다만, 국내의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는 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 5 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표창대상자를 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
3.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개정 88. 8. 13)
4.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 여부
5.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 여부
6. 유사한 내용의 타공적자와의 균형
7.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따른 여론
8. 대상자의 훈결사유 유·무
9.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10. 기타사항(근무연수·근무부서·직부분야·연령등)

②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많은자

③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물위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한 자

제 6 조(구비서류) ①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

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부 칙<8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4.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간사)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육성과장이 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임기중 또는 임기후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부 칙(91. 5.28)

1.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5. 체육청소년부표창규정 [1982. 4. 9 체육부훈령 제1호]

개정 1983. 11. 9 체육부훈령 제18호
1988. 8. 13 체육부훈령 제31호
1990. 11. 8 체육부훈령 제46호
1991. 4. 18 체육청소년부훈령 제5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과 표창을 행함에 있어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는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표창시기) ①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모범 및 우수공무원 표창: 연1회
2.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연1회(개정: 88. 8. 13)

③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순직자의 표창
2. 의전상 관계적인 서훈
3. 국내의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및 성적우수자
4.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적극 협조한 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개정 88. 8. 13)

제 3 조(표창의 추천) ①표창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총무과장 및 산하 각 기관의 장과 표창의 추천을 의뢰받은 자가 행한다. 다만, 산하 각 기관의 장은 부내 각실·국장과 총무과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그 산하 직원이 아닌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직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삭제 88. 8. 13)

⑤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 및 총무과장이 행한다.

제 4 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인 체육청소년부장관 소속하에 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청소년부차관이 되고 심사위원은 각 실·국장·공보관·비상계획관·청소년기획관·청소년협력관·감사담당

관 및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8. 8. 13, 90. 11. 8, 91. 4. 18)

③간사는 인사담당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④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를 선발 결정한다. 다만, 국내외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는 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 5 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표창대상자를 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임정을 기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
3.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개정 88. 8. 13)
4.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 여부
5.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 여부
6. 유사한 내용의 타공적자와의 균형
7.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따른 여론
8. 대상자의 훈결사유 유·무
9.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10. 기타사항(근무연수·근무부서·직부분야·연령등)

②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많은자

③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물가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한 자

제 6 조(구비서류) ①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

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부 칙<8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4.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간사)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육성과장이 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임기중 또는 임기후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부 칙(91. 5.28)

1.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5. 체육청소년부표창규정 〔 1982. 4. 9 체육부훈령 제1호 〕

개정 1983. 11. 9 체육부훈령 제18호
1988. 8. 13 체육부훈령 제31호
1990. 11. 8 체육부훈령 제46호
1991. 4. 18 체육청소년부훈령 제5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과 표창을 행함에 있어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는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표창시기) ①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모범 및 우수공무원 표창 : 연1회
2.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연1회(개정 : 88. 8. 13)

③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순직자의 표창
2. 의전상 관례적인 서훈
3.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및 성적우수자
4.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적극 협조한 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개정 88. 8. 13)

제 3 조(표창의 추천) ①표창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총무과장 및 산하 각 기관의 장과 표창의 추천을 의뢰받은 자가 행한다. 다만, 산하 각 기관의 장은 부내 각실·국장과 총무과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그 산하 직원이 아닌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직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삭제 88. 8. 13)

⑤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은 부내 각 실·국장 및 총무과장이 행한다.

제 4 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인 체육청소년부장관 소속하에 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청소년부차관이 되고 심사위원은 각 실·국장·공보관·비상계획관·청소년기획관·청소년협력관·감사담당

관 및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8. 8. 13, 90. 11. 8, 91. 4. 18)

③간사는 인사담당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④체육청소년부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를 선발 결정한다. 다만, 국내외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는 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 5 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표창대상자를 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
3.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체육발전 및 청소년육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개정 88. 8. 13)
4.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 여부
5.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 여부
6. 유사한 내용의 타공적자와의 균형
7.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따른 여론
8.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
9.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10. 기타사항(근무연수·근무부서·직무분야·연령등)

②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많은자

③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물의를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한 자

제 6 조(구비서류) ①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

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부 칙(8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4.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